

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

제2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현황

제3절

항공사 운송약관



## 제3절 항공사 운송약관

- ❖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운송인의 책임에 있어서는 '몬트리올 협약'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음.
- ❖ 항공사별 약관은 항공기 지연·결항에 대한 배상범위, 수하물 파손·분실·지연에 대한 배상범위, 항공사고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, 좌석초과예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.

### 1. 국적항공사 국내 여객운송약관

#### 가. 대한항공

- ❖ 대한항공 국내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7월 1일 발행 내용이 적용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환불할 시, 미사용 항공권은 지불운임 전액에서 취소 위약금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, 일부 사용 항공권은 기 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환불할 시, 미사용 항공권의 운임 전액을, 목적지로 운송 도중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경우 당해 취소지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함.
  - ▶ 단, 운항 스케줄 변경 및 대한항공의 운송 거절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함.
- ❖ 제38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와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



- 기 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  - ❖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, 항공사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,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교통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되, 상법에 명시된 한도(여객 1명당 1,000SDR)를 초과하지 아니함.
  - ❖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항공교통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,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 되어야 함.
  - ❖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짐.
    - ▶ 또한 손해가 수하물의 고유한 결함,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.
  - ❖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짐
  - ❖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항공,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함.
  - ❖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,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법에 명시된 한도(여객 1명당 1,131SDR)를 초과하지 않으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증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된 가격으로 함.
    - ▶ 단, 증가요금을 지불한 경우라 하더라도,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

가격을 초과하지 않음.

- ❖ 항공교통이용자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수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대한항공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,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.
- ▶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항공교통이용자는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.

## 나. 아시아나항공

- ❖ 아시아나항공 국내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7월 19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여객의 사정에 의해 환불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 및 예약 취소, 부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며,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운임 중에서 기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관련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함.
- ❖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의 경우,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, 목적지로 운송도중 어느 지점에서 운송이 중단되는 경우는 그 중단지점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중단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함.
- ❖ 제39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 및 제41조 배상의 범위에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자 피해에 관한 책임과 그 배상한도,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.
  - ▶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힘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  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아시아나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은 여객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, 항공기가 도



착한 날,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됨.

- ❖ 여객의 연착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여객 1명당 1,000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, 아시아나항공이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.
- ❖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, 연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  - ▶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에는 여객이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.
  - ▶ 위탁수하물의 멸실·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,131SDR을 초과하지 않음.
  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된 가격이 됨.

#### 다. 에어부산

- ❖ 에어부산 국내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7월 19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39조 항공사의 책임 및 제41조 배상의 범위에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자 피해에 관한 책임과 그 배상한도,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 이하의 부분은 항공사의 과실 없음을 주장할 수 없음.
- ❖ 위탁수하물의 손상, 분실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당해 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에 발생된 경우에

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며, 항공사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
- ▶ 위탁수하물의 손상의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, 분실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당해 물품이 여객에게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.
- ▶ 위탁수하물의 손상, 분실,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,131SDR을 초과하지 아니함.
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

## 라. 이스타항공

- ❖ 이스타항공은 약관의 제정 및 개정일을 명시하지 않음.<sup>12)</sup>
- ❖ 제40조 항공사의 책임 및 제42조 배상의 범위에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자 피해에 관한 책임과 그 배상한도,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사는 여객의 사망·상해에 대하여 그 사고가 항공기내 또는 항공기 승강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정확한 책임 범위 및 배상 한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.
  - ▶ 다만, 항공사의 직원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,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.
- ❖ 수하물의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요인이 된 사고가 당해 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짐.
  - ▶ 다만, 항공사의 직원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,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,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.

12) 본 보고서는 2016년 7월 20일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내운송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됨.



- ▶ 위탁수하물의 손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, 위탁수하물의 분실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여객에게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.
- ▶ 수하물의 파손,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질 경우 위탁수하물은 kg당 미화 20불을, 휴대수하물인 경우 1인당 미화 4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함.
- ▶ 수하물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#### 마. 제주항공

- ❖ 제주항공 국내 여객운송약관은 2015년 3월 9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37조 항공사의 책임 및 제39조 배상의 범위에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자 피해에 관한 책임과 그 배상한도,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, 해당 손해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재된 경우 항공사의 손해 배상 책임이 축소된다고만 규정.
  - ▶ 이외에 항공사의 배상한도에 대한 규정 없음.
- ❖ 항공기의 지연·결항 발생 시 항공사의 책임, 책임의 범위, 배상의 한도 등에 대한 규정 없음.
  - ▶ 다만,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체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함.
- ❖ 위탁수하물의 파손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 시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, 위탁수하물의 분실시

인도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.

- ▶ 위탁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kg당 미화 20불, 휴대수하물 및 기타 소유물에 대하여는 여객 1명당 미화 400불의 한도내에서 배상함.
- ▶ 그러나 항공사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않음.
- ▶ 위탁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규정 없음.

## 바. 진에어

- ❖ 진에어의 국내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3월 7일 발행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38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 및 제40조 여객의 배상의책임에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자 피해에 관한 책임과 그 배상한도,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사고가 항공기 상 또는 항공기 승강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으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 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.
- ❖ 여객의 연착 발생 시 진에어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함.
  - ▶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의 책임은 여객 1명당 1,000SDR을 초과하지 않음.
- ❖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, 연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또한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, 특수한 성질,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 시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, 위탁수하물의 연착시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.
  - ▶ 여객 1명당 1,131SDR을 초과하지 않으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





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증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 그러나 항공사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않음.

### 사. 티웨이항공

- ❖ 티웨이항공 국내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7월 15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36조 항공사의 책임 및 제38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에서 항공사의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에 관한 책임과 그 배상한도,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  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여객의 지연 인도 시 항공사의 책임, 책임의 범위, 배상의 한도 등에 대한 규정 없음.
- ❖ 위탁수하물의 파손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 시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, 위탁수하물의 분실 시 인도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.
  - ▶ 위탁수하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kg당 한화 20,000원, 휴대수하물 및 기타 소유물에 대하여는 여객 1명당 한화 400,000원의 한도내에서 배상함.
  - ▶ 그러나 항공사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않음.
  - ▶ 위탁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규정 없음.

## 아. 7개 국적항공사 비교

- ❖ 전 국적항공사는 개정된 '상법'을 적용하여,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1인당 113,100SDR을 적용하고 있음.
  - ▶ 그러나, 에어부산, 이스타항공, 티웨이항공 등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한도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.
- ❖ 7개 국적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멸실 및 훼손에 관해서는 7일 이내, 분실이나 지연에 관하여는 21일 이내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  - ▶ 통지 방법에 대하여 대형항공사는 서면 및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
- ❖ 수하물의 파손, 분실 및 지연에 관하여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에어부산, 진에어는 '상법'의 규정을 적용하여 1인 당 1,131SDR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  - ▶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수하물의 파손, 분실 및 지연에 관하여 위탁수하물의 경우 kg 당 미화 20불, 휴대수하물 및 기타휴대품의 경우 인당 미화 40불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.
  - ▶ 티웨이항공의 경우 수하물 피해에 관하여 위탁수하물의 경우 kg 당 한화 20,000원, 휴대수하물 및 기타휴대품의 경우 인당 한화 400,000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.



〈표 2-10〉 국적항공사 국내 여객운송약관 비교

구분	대한항공	아시아나 항공	에어부산	이스타 항공	제주 항공	진에어	티웨이 항공
여객의 사망 및 신체적 부상	113,100 SDR까지 무과실 배상						
	초과분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						
	2년 이내에 책임에 대하여 제소						
여객의 지연	책임한도 1,000 SDR	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	규정 없음	책임한도 1,000 SDR	항공사 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한 도 1,131 SDR	규정 없음	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
위탁 수하물의 파손·분 실 및 지연	항공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한도 1,131 SDR			책임한도 위탁수하물 미화 20불, 휴대수하물 인당 미화 400불	항공사 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한 도 1,131 SDR	책임한도 위탁수하물 ₩20,000/kg 휴대수하물 ₩400,000/ 인	
통지 기한 -수하물 파손 통지 기한	수령 후 7일 이내 통지						
-수하물 지연 및 분실	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의제기						

## 2. 국적항공사 국제 여객운송약관

### 가. 대한항공

- ❖ 대한항공 국제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7월 1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17조 운송인의 책임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와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  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여객의 연착 발생 시 항공사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,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교통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함.
  - ▶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체 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.
- ❖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, 분실의 경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령한 후 7일, 분실 및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에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1인당 1,131SDR로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



상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,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,000프랑 또는 그 상당액(미화 약 400불)의 한도 내에서 배상

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증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

### 나. 아시아나항공

- ❖ 아시아나항공 국제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7월 19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15조 운송인의 책임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와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  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여객의 지연 인도 시 항공사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,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교통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함.
  - ▶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체 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.
- ❖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, 분실의 경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령한 후 7일, 분실 및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에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1

인당 1,131SDR로 함.

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,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,000프랑 또는 그 상당액(미화 약 400불)의 한도 내에서 배상
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

#### 다. 에어부산

- ❖ 에어부산 국제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5월 19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16조 운송인의 책임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와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  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여객의 지연 인도 시 항공사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,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교통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함.
  - ▶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체 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.
- ❖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, 분실의 경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령한 후 7일, 분실 및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에 위



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
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1인당 1,131SDR로 함.
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,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,000프랑 또는 그 상당액(미화 약 400불)의 한도 내에서 배상
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
- ❖ 이외에도 초과예약 등으로 인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대체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도록 함.

### 라. 이스타항공

- ❖ 이스타항공은 약관의 제정 및 개정일을 명시하지 않음.<sup>13)</sup>
- ❖ 제16조 운송인의 책임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와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  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여객의 지연 인도 시 항공사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,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교통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함.

13) 본 보고서는 2016년 7월 20일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제운송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됨.

- ▶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체 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.
- ❖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, 분실의 경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령한 후 7일, 분실 및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에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위탁수하물의 파손에 대해서 필히 항공사 직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1인당 1,131SDR로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,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,000프랑 또는 그 상당액(미화 약 400불)의 한도 내에서 배상
  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

#### 마. 제주항공

- ❖ 제주항공 국제 여객운송약관은 2015년 3월 9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15조 운송인의 책임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와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  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




- ❖ 여객의 연착 발생 시 항공사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,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교통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함.
  - ▶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체 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.
- ❖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, 분실의 경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령한 후 7일, 분실 및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에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1인당 1,131SDR로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,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,000프랑 또는 그 상당액(미화 약 400불)의 한도 내에서 배상
  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증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

## 바. 진에어

- ❖ 진에어의 국제 여객운송약관은 2016년 1월 14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17조 운송인의 책임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와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
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여객의 연착 발생 시 항공사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,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교통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함.
- ▶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체 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.
- ❖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, 분실의 경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- ▶ 위탁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령한 후 7일, 분실 및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에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1인당 1,131SDR로 함.
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킬로그램 당 250프랑스 골드프랑,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,000프랑 또는 그 상당액(미화 약 400불)의 한도 내에서 배상
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

#### 사. 티웨이항공

- ❖ 티웨이항공 국제 여객운송약관은 2015년 6월 5일 개정 내용이 적용됨.
- ❖ 제15조 운송인의 책임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와 범위 등을 규정함.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



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여객 1명당 113,1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 면할 수 없음.

- ▶ 여객 1명당 113,1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여객의 연착 발생 시 항공사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,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교통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함.
  - ▶ 항공교통이용자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체 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며, 항공교통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.
- ❖ 수하물의 파손, 분실의 경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령한 후 7일, 분실 및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에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1인당 1,131SDR로 함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킬로그램 당 250프랑스 골드프랑,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,000프랑 또는 그 상당액(미화 약 400불)의 한도 내에서 배상함.
  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증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된 가격이 됨.
- ❖ 이외에도 초과예약 등으로 인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대체운송편을 제공하거나,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도록 함.

### 아. 7개 국적항공사 비교

- ❖ 국제 여객운송약관의 경우 7개 국적사가 거의 유사함.
  - ▶ 이는 국제선의 경우 '몬트리올 협약' 및 '바르샤바 협약', '개정 바르샤바 협약'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
〈표 2-11〉 국적항공사 국제 여객운송약관 비교

구분	대한항공	아시아나 항공	에어부산	제주항공	진에어	이스타 항공	티웨이 항공
여객의 사망 및 신체적 부상	113,100 SDR까지 무과실 배상						
	초과분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						
여객의 지연	대체 운송편 제공 또는 환불						
	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적용						
	책임한도 4,694SDR						
위탁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·지연	몬트리올 협약 적용 시 책임한도 1,131 SDR						
	몬트리올 협약 비적용 시 위탁수하물은 F250/kg(미화 20불), 휴대수하물은 F5,000/인(미화 400불 상당) 책임한도 적용						
	수령 후 7일 이내 통지						
	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의제기						



### 3. 외국적항공사 여객운송약관<sup>14)</sup>

#### 가. 중국남방항공

- ❖ 중국남방항공의 한국어홈페이지에는 2003년 7월 18일자 개정본이 게재되어 있으며, 약관에 의하면 중국 민용항공당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의 어느 조항이라도 수정 가능함.
- ❖ 중국은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, 약관 제17조에 따르면 중국남방항공은 바르샤바 협약 및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.
  - ▶ 따라서 여객의 사망, 부상,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하여 남방항공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배상은 법률에 의하여 100,000SDR까지만 책임이 제한됨.<sup>15)</sup>
  - ▶ 남방항공의 대만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, 남방항공은 여객의 비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위탁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 한도는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음.

#### 나. 중국동방항공

- ❖ 중국동방항공은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영문 운송약관을 게재하고 있음.
- ❖ 제18조 배상의 책임에 의하면, 동방항공은 운송약관 상에 정확한 배상한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객의 사망 및 부상, 수하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시 그에 따라 배상된다고 언급하고 있음.
  - ▶ 또한 항공사의 배상 책임 한도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명시함.

14) 외국적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은 한국어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관을 기준으로 함.

15)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시 책임이 제한되지 않음.

## 다. 중국국제항공

- ❖ 중국국제항공은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영문 운송약관을 게재하고 있음.
- ❖ 제15조에 의하면, 중국국제항공의 출발국, 도착국 또는 경유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이 다를 수 있으며, 협약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, 신체적 상해,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.
  - ▶ 약관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따른 배상 한도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.
  - ▶ 이 때 말하는 협약이란, 바르샤바 협약, 개정바르샤바 협약, 몬트리올 협약 등이 있음.
- ❖ 수하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, 수하물의 분실 및 지연에 대해서는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중국국제항공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.

## 라. 일본항공

- ❖ 일본항공은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영문 운송약관을 게재하고 있음.
- ❖ 제18조에 의하면,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항의 경우,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관하여 항공사와 항공교통이용자의 책임 범위를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▶ 제18조는 여객의 사망, 신체적 부상, 도착 지연, 수하물의 분실, 파손 등을 피해로 규정하고, 피해에 대하여 항공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.
  - ▶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항의 경우,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 및 신체의 상해에 대해서 113,100SDR의 무과실 책임과 일본항공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시 무제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위탁수하물의 피해에 관해서도 1,131SDR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.



- ▶ 또한,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항의 경우에 위탁수하물은 킬로그램당 17SDR, 기내수하물은 항공교통이용자 1인당 332SDR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▶ 이외에도 일본항공의 출발국가, 도착국가, 경유국가에 따라 바르샤바 및 개정 바르샤바 협약 등이 적용될 수 있음.
- ❖ 수하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, 수하물의 분실 및 지연에 대해서는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일본항공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.

#### 마. 베트남항공

- ❖ 베트남은 몬트리올 협약 미가입국으로 바르샤바 협약 및 개정 바르샤바 협약만 효력이 있음.
- ❖ 베트남항공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, 베트남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한 항공교통이용자 및 수하물의 피해에 대해 100,000SDR까지만 책임을 제한함.
  - ▶ 그러나, 미국 내의 한 지점을 목적지 또는 예정기착지로 하는 국제운송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해 미화 75,000불까지 배상 책임을 짐.
- ❖ 수하물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노선에 한하여 위탁수하물일 경우 킬로그램 당 미화 20불을, 미신고수하물일 경우 승객 당 미화 400불 한도내에서 배상을 함.
  - ▶ 반면, 베트남 민간항공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이용자 1인 당 1000SDR까지 배상 하도록 함.
  - ▶ 수하물의 분실, 파손에 대해서는 수하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, 수하물 지연인 경우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함.

#### 바. 태국항공

- ❖ 태국항공은 바르샤바 협약 및 개정 바르샤바 협약만 적용함.

- ❖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·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여객 1명당 100,000SDR까지는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.
  - ▶ 여객 1명당 100,000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함.
- ❖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, 분실의 경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항공사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함.
  - ▶ 위탁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령한 후 7일, 분실 및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에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
  - ▶ 위탁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배상은 위탁수하물의 경우 킬로그램 당 17SDR(미화 20불), 휴대수하물의 경우 승객 1인당 332SDR(미화 400불)의 한도 내에서 배상함.
  - ▶ 그러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 된 가격이 됨.

#### 사. 에어아시아

- ❖ 제6.1.3조(좌석 이용불가능)에서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대체운송편을 제공하며, 필요한 경우 예약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.
  - ▶ 이외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특별 조치는 없음.
- ❖ 제9.2조(스케줄 취소 및 변경)에 따르면,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발생 시,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대체운송편을 제공함.
  - ▶ 필요한 경우 숙박, 연결 교통편, 수하물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.
- ❖ 제11조(배상 책임 한계)에 의하면,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바르샤바 협약을 적용하여, 항공교통이용자의 부상 또는 사망 및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음.





- ▶ 그 외에, 배상 책임의 한도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.
- ❖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,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, 해당 법에 따라 입증된 손실과 비용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함.

### 아. 피치항공

- ❖ 제18조에 의하면, 피치항공의 책임에 대하여 운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함.
  - ▶ 이 때 협약이란 바르샤바 협약, 개정바르샤바 협약, 몬트리올 협약 등을 말함.
- ❖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항의 경우,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 및 신체의 상해에 대해서 113,100SDR의 무과실 책임과 피치항공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시 무제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위탁수하물의 피해에 관해서도 1,131SDR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.
  - ▶ 그러나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항의 경우,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관하여 항공사와 항공교통이용자의 책임 범위를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▶ 또한,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항의 경우에 위탁수하물은 킬로그램당 17SDR, 기내수하물은 항공교통이용자 1인당 332SDR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❖ 수하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, 수하물의 분실 및 지연에 대해서는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중국국제항공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.

### 자. 세부퍼시픽

- ❖ 제13조에 의하면,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 및 신체적 부상, 지연의 피해에 대한 세부퍼시픽의 책임은 항공편 출발국가, 도착국가, 환승국가 등 운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함.
  - ▶ 이 때 협약이란 바르샤바 협약, 개정바르샤바 협약 등을 말함.

- ❖ 위탁 수하물 파손 및 지연 또는 분실 등의 피해 발생 시, 세부퍼시픽은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킬로그램 당 USD 20의 배상을 하도록 함.

#### 차. 에어아시아 익스

- ❖ 제11조(배상 책임 한계)에 의하면, 에어아시아 익스의 출발국, 도착국 또는 경유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이 다를 수 있으며, 협약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사망, 신체적 상해,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.
  - ▶ 약관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따른 배상 한도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.